



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정

규정 번호	4-1-51
제정 일자	2023. 12. 7.
개정 일자	2024.4.15.
책임부서/팀	교무처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.) 반려동물보건과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·분석·평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4.4.15. 개정>

제2조 (기구와 기능)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에 따라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로 구성하며, 위원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준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.

제3조 (역할)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자체평가기획 및 기본 방향과 전략 수립
 2.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·재정 지원
 3. 그 밖에 인증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
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1. 평가 영역별 전문성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
 2. 자료의 분석과 평가
 3. 자체평가보고서 작성
 4. 그 밖에 인증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

제4조 (자체평가기획위원회 구성) ① 총장 및 부서장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2024.4.15.개정>

-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내·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-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총장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제5조 (자체평가위원회 구성) ① 반려동물보건과 전임교원 및 부서팀장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한다.<2024.4.15. 개정>

-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보건과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내·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<2024.4.15. 개정>
-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제6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위원장이 지명한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각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
제7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

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의는 대면·비대면(온라인, 서면 등)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③ 예산 한도 내에서 평가업무수행에 대한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(회의록 또는 문서)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.

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9조 (보고) 위원장은 비공개인 경우를 제외하고,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련 위원회 또는 교수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과 전문기관의 지침(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기준)을 준용하되,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